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성 물질 통제국

공식 정책

민권 정책

DTSC-XX-XXXX

정책 주제/제목

공식 정책 번호

초고

발행일/유효일

제 6장 정책 및 절차 (DTSC-OP-0025) (2006년 9월 25일)

정책 번호 대체

전 직원

민권 사무소

목표 대상

발행 단위

바바라 A. 리(Barbara A. Lee)

소장

이름

직책

초고

서명

서명일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페이지

I.	정책 준칙
II.	목적
III.	관계 당국
IV.	정책 시행
V.	정의
VI.	민권에 대한 DTSC 의 약속
VII.	문의 및 민원
VIII.	자료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I. 정책 준칙

독성 물질 통제국 (DTSC)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람에게 환경 정의, 균등한 기회 그리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DTSC는 1964년 민권법 제6장과 캘리포니아주 정부 규정 11135항의 의도와 조항을 계속해서 지켜왔으며 지켜갈 것입니다. 이 두 법이 병합되면 그 어느 누구도 DTSC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규제 활동에서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계통, 국적, 민족 집단 분류,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상태 혹은 성적 성향에 근거한 차별 행위에 참가하거나 그것 때문에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당할 수 없습니다. DTSC는 DTSC가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 혜택을 받는 데 있어 그 누구라도 차별을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I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1964년 민권법 제6장, 행정 명령 13166, 캘리포니아주 정부 규정 11135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다이멀리-알라토레 이중 언어 서비스법을 포함해 연방 및 주 민권법을 차별 없이 준수하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III. 관계 당국

다음은 연방 및 주 법, 규정 그리고 이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지침 목록의 일부입니다.

1. 1964년 민권법 제 6장 (공공 자료 88-352 § 601 (1964년 7월 2일), 78 법령집.252)
2. 행정 명령 13166, 65 FR 50121 (2000년 8월 11일)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3. 다이멀리-알라토레 이중 언어 서비스 법 (정부 규정, § 7290 이하 참조)
4. 정부 규정 § 11135
5. 보건 안전 규정, § 39711
6. 1975년 연령차별금지법 ((공공자료 94-135 (1975년 11월 28일), 42 U. S. C. § 6101 이하 참조 하에 성문화됨
7. 1973년 재활법 504항 (29 U.S.C.A § 794 하에 성문화됨
8. 제한된 영어 능력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출신 국가 차별을 금하는 제 6장에 관련된 연방 재정 보조 수혜자 대상 지침 (행정 명령 13166, 65 FR 35602 (2004년 6월 25일))
9. 소수 집단 및 저소득층 대상 환경 정의를 다루는 연방 조치(행정 명령 12898, 59 Fed. Reg. 7629 (1994년 2월 16일))
10. 미국 환경보호국, 행정 명령 13166 준수: 제한된 영어 능력자의 서비스 지원 향상, 2017년 2월 10일, (분류 번호 1000.32) U.S.
11. 미국 환경보호국, 외부 민권 준수 관련서류 (2017년 1월 18일)
12. 독성 물질 통제국, 케틀만 제 6장 합의서, 2016년 8월 10일

IV. 정책 시행

이 정책 시행에 대한 심화 지침으로 DTSC 는 최소한 유해 폐기물 허가 결정, 집행 활동 그리고 정화 결정에 있어 민권을 보호하는 단계를 포함해 필요한 경우 민권 시행 계획을 개발, 평가 그리고 수정할 것입니다.

V. 정의

이 정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어 정의가 사용됩니다.

- a. 민원 제기자: 이 정책 하에서 민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다른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자. DTSC가 민권법을 위반해 차별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원을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b. 차별: DTSC가 제공하고 주최하거나 관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할수있는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호받는 특징 때문에 불법적으로 거부당하는 것.
- c. 보호받는 특징: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개인의 특징으로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계통, 국적, 민족 집단 분류,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상태 혹은 성적 성향이 여기에 포함된다.

VI. 민권에 대한 DTSC의 약속

1964년 민권법 제6장은 “미국 내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혹은 국적 때문에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것 때문에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규정 11135항은 “미국 내 그 어느 누구도 주 혹은 다른 주기관에서 실시하고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 정부로부터 어떤 재정 지원이라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계통, 국적, 민족 집단 분류,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상태 혹은 성적 성향 때문에 혜택에 대한 온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불법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차별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지원 수혜자로서 DTSC는 1964년 민권법 제6장과 캘리포니아주 정부 규정 11135항을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DTSC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환경 정의, 균등한 기회 그리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지킵니다. DTSC가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차별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DTSC는 행정 서비스실을 통해 DTSC가 관리하거나 관리 책임이 있는 모든 해당 정책, 절차, 입찰, 보증, 보조금 그리고 계약에 대해 연방·민권 요건을 만족시킬것입니다. DTSC는 연방 권리와 민권에 관한 요건들을 DTSC가 관리하는 모든 DTSC 계약자, 하청업자 그리고 주·연방 보조금 수혜자에게로 확장할 것입니다.

민권에 헌신하기 위해 DTSC는 최소한 유해 폐기물 허가 결정, 유해 폐기물 시설 준수 검사, 유해 폐기물 시설 집행 활동 그리고 전에 사용된 방어 지역과 기타 오염된 지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환경정화를 하는데 있어서 민권을 보호하는 단계를 포함해 필요한 경우 민권 시행 계획을 개발, 평가 그리고 수정할 것입니다.

또한, DTSC는 CalEnviroScreen과 같은 사용 가능한 정보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며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 정책을 준수하고 '민권 시행 계획'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지식과 정보를 활발하게 개량·개선할 것입니다.

DTSC는 또한 다른 방법 중에서 통역과 번역을 통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를 이해할 때 겪는 제한된 영어 능력(LEP) 장애를 없애거나 줄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제한된 영어 능력자가 조기에 공평하고 의미있는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DTSC 민권 시행 계획'에는 또한 최소한 유해 폐기물 허가 결정, 집행, 추가 환경 프로젝트, 환경 정화 계획 그리고 보조금 및 기타 기금 획득 기회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언어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TSC의 언어 지원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DTSC-XX-XXX (날짜))

VII. 문의 및 민원

이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DTSC 민원실 (916) 324-3094로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ocr@dtsc.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민원실에 팩스를 보내셔도 되는데 번호는 (916) 322-2844이며, 편지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Attn: Office of Civil Rights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1001 "I" Street, 12th Floor
Sacramento, CA 95814

귀하가 이 정책이나 주 민권법을 위반한 기타 차별 대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DTSC

웹사이트(http://www.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443.pdf)를 방문하거나 DTSC 민권실 (916) 324-3094에 전화를 해 DTSC 민권 민원 양식(양식 XXXX)을 구해 민원을 DTS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¹ DTSC 민권 위반 민원 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미국 환경청(US EPA) 민권실에 민원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US EPA 웹사이트(<https://www.epa.gov/ocr>)에 나와 있습니다.

1. DTSC에 민권 민원 제출하기

민원 제기자는 직원이나 계약자를 포함해 DTSC가 제기자에 대해 민족 집단 분류, 계통, 종교, 나이, 성, 성적 성향, 피부색, 유전 정보,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질병,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DTSC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¹ 이 수칙에 개관한 민권 위반 민원 과정은 비(非) DTSC 직원에 해당됩니다. 민권 위반을 주장하는 DTSC 직원도 민권실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권 위반 민원 관련 DTSC 직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민권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이 수칙에 개관된 민원 과정은 직원이나 계약자를 포함해 DTSC가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해당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신청에 대한 DTSC의 검토,
- 항소를 포함해 유해 폐기물 시설에 대한 DTSC의 허가 결정, 그리고
- DTSC의 시정 조치 혹은 환경 정화.

민원 제기자는 DTSC 민권 민원 양식(양식 XXXX)을 DTSC에 이메일(ocr@dtsc.ca.gov)이나 팩스((916) 322-2844)로 제출하거나 아래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Attn: Office of Civil Rights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1001 "I" Street, 12th Floor
Sacramento, CA 95814

민원 제기자는 또한 DTSC에 서명과 날짜가 들어간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됩니다.

- 현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장하는 차별 행위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DTSC 직원이나 DTSC 계약자나 하청업자를 포함해 주장하는 차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해 알고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자를 보호되는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서 차별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나 차별당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밝혀주시요.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 민원을 적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민권 민원 양식(양식 XXXX)과 같은 방식으로 진술서를 DTS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

민원 제기자는 자신의 민원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시에 제출하려면 모든 민원이 다음의 날짜로부터 36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주장된 차별 행위가 일어난 날짜,
- 민원 제기자가 주장된 행위가 차별된 행위라고 알게 된 날짜,
- 같은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마지막 차별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

2. DTSC의 민권 민원 검토

DTSC는 문서로 된 민원을 모두 검토해 아래의 사항에 따라서 사안이 DTSC 관할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민원 제기자는 위에 기술된 대로 민권 민원 양식(양식 XXXX)이나 기타 서명과 날짜가 들어간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자 본인이 보호된 특징을 지닌 이유로 주장된 차별 행위를 받았거나 보호된 특징을 지닌 이유로 주장된 차별 행위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 민원은 적시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 민원에서 주장된 차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한 DTSC 직원이나 DTSC 계약자인지 혹은 하청업자인지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 민원에서 민원 제기자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주장된 행위에 대해 상세한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DTSC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민원 접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DTSC는 민원 접수를 확인한 후 30 일 이내에 민원 제기자에게 다음의 내용 중 하나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1) DTSC가 관할권을 지니며 민원을 조사하기로 한다. (2) DTSC가 민원을 거부한다. 혹은 (3) DTSC가 민원을 적절한 기관에 의뢰한다.

DTSC가 관할권을 지니며 민원을 조사하기로 한 경우 DTSC는 이 결정을 내린 후 오(5) 일 이내에 민원 조사관을 지정합니다.

민원 제기자가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차별 행위로 보이지 않지만 재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DTSC는 재량권을 써서 그 민원을 DTSC 내부의 당사자나 DTSC 외부로 보내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DTSC는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원 제기자에게 이 조치에 대해서 구두 혹은 문서로 통보할 것입니다.

3. 민권 민원에 대한 DTSC의 조사

DTSC가 민원 조사를하기로 결정한 경우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DTSC는 민원의 신빙성에 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DTSC는 차별 민원의 신빙성에 대해 민원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4. DTSC에 제출한 민권 민원의 비밀 보장

DTSC는 민원 제기자와 민권 민원 과정 참여자 모두에 대한 비밀을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성격상 절대적인 비밀 보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권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있습니다. DTSC가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민원 과정 동안 제공된 정보를 적절한 DTSC 직원이나 외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VIII. 자료

- DTSC 의사소통 지원 해결 양식 (양식 1602):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pdf (영어)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E.pdf (스페인어)
- 서비스 거부에 대한 DTSC 민원 양식: _____
- DTSC 공공 참여 설명서: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PPP/upload/DTSC-PublicParticipationManual.pdf>.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국 독성물질통제국

민권 민원

이 양식은 캘리포니아주 독성 물질 통제국(DTSC)이 대중에게 제공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차별에 대해 대중 일원이 민원을 제출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은 1001 I Street, Sacramento, CA 95814(주의: 민권 민원, 전화번호 (916) 324-3094, 팩스 번호 (916) 322-2844)에 위치한 DTSC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주의해서 읽고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민원 양식에 첨부된 것은 이 민원 양식을 작성하는데에 필요한 지침이 되는 "제6장 차별 민원을 DTSC 민권실에 제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실 보고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으면 이 민원 양식에 첨부하십시오.

1. 민원 제기자 정보:

이름	집 주소	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낮 시간 전화번호 (번호가 다른 경우)	

2. 차별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위와 다른 경우:

이름	집 또는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낮 시간 전화번호 (번호가 다른 경우)	

3. 차별을 받은 사람, 단체, 부서 혹은 회사:

단체, 부서 혹은 회사	주소	전화번호
개인의 이름 (알고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 (알고 있는 경우)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4. 귀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하가 어떻게 차별을 받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복을 받았습니까? 추가 지면이 필요하면 페이지를 추가하십시오.

5. **왜** 귀하는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귀하에게 일어난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계통, 국적, 민족 집단 분류,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상태 혹은 성적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귀하에게 일어난 일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페이지를 추가하십시오.

6. 귀하가 제기한 민원, 즉 차별, 괴롭힘 혹은 보복 행위 혐의를 누가 목격했으며 알고 있습니까? 차별, 괴롭힘 혹은 보복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필요하면 페이지를 추가해 주십시오.

7. 차별, 괴롭힘 혹은 보복 행위가 **언제**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차별 행위가 최초로 일어난 날짜와 가장 최근에 일어난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DTSC는 모든 조사에서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적인 비밀보장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당사자 모두가 지닌 권리인 적절한 과정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DTSC는 조사 시 많은 사람을 면담해야 합니다. 비밀 보장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인정되고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이 제기되고 불법 행위가 DTSC에 알려지면 익명성과 절대적인 비밀 보장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와 하는 면담 절차를 귀하가 엄격하게 비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파일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그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증 및 서명

나는 내가 숙지하고 알고 믿고 있는 한 상기 정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약합니다.

날짜: _____

이름 _____

서명 _____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민권 민원 제출하는 방법

DTSC는 그 누구도 성, 인종, 피부색, 종교, 계통, 국적, 민족 집단 분류,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상태 혹은 성적 성향 때문에 DTSC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1964년 민권법 제6장이나 정부 규정 11135항에 준하여 DTSC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귀하가 생각한다면 민원을 DTSC 민권실(OCR)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권 민원은 주장된 차별 행위가 일어난 지 일 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 년 제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을 찾지 못한 경우 추가로 90일 이내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TSC 민원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민원 양식 머리말에 나와 있습니다.

민권실이 귀하의 민원을 조사하려면 특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원 제출 시 아래 지시 사항을 잘 따라 주십시오. 다음 지시 번호는 '차별 민원 양식'에 나오는 번호와 일치합니다.

1. '민원 제기자 정보' 아래에 귀하의 법적인 이름,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낮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2. '차별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위와 다른 경우' 아래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알고 있는 경우 이메일을 적어주십시오.

3. '차별을 한 사람, 단체, 부서 혹은 회사' 아래에 차별을 했다고 귀하가 생각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술하십시오.

4. '귀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래에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각 사건에 대해 짧지만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 a.** 귀하를 연방 보조를 받거나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외되었습니다
- b.** 귀하를 연방 보조를 받거나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주는 혜택을 거부당했습니다.
혹은
- c.** 귀하를 연방 보조를 받거나 주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혹은 활동중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5. '왜 귀하가 제외되고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래에 귀하의 민원을 민권실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주장된 차별 대우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DTSC가 내 국적 때문에 오염 민원을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DTSC의 시행 서비스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국적입니다. 1964년 민권법 제6장이나 정부 규정 11135항에 의하면 개인의 **성, 인종, 피부색,**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종교, 계통, 국적, 민족 집단 분류, 나이,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질병, 유전 정보, 결혼 상태 혹은 성적 성향 때문에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을 금합니다.

6. '제외되고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행위를 누가 목격했거나 알고 있습니까' 아래에 귀하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 (성 포함),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적어 주십시오.

7. '제외되고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은 행위가 언제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래에 이런 행위가 최초로 일어난 날짜와 가장 최근에 제외되고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행위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